

[붙임]

2026학년도 제1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이수 안내

1. 관련

- 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 나.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2. 대상 교과목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학점	담당교수	강의 시간
DCZ99558	1	교육봉사활동	2	최홍원	토0,1(A102)

※ 강의 시간 및 강의실은 임의 배정으로, 별도 수업은 진행하지 않음

3. 봉사활동 시간: 총 60시간 이상

4. 봉사활동 시기: 4학기까지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5학기 이수도 가능함)

5. 봉사활동 방법

학생	봉사 기관 섭외 - 개인교섭: 학생이 직접 실습을 원하는 기관을 섭외 - 단체교섭: 상명대학교 교직원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를 배정(02-2287-5089)
학생 ▶ 대학원	봉사활동 2주 전까지 대학원교학팀에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불인정
대학원 ▶ 학생	봉사기관 및 봉사내용을 적합 여부를 판단 후 학생에게 통보
학생	1. 학기 중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활동 진행 2. 교육봉사일지 작성 가. 교육봉사일지는 봉사활동을 수행할 때마다 작성 나. 봉사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확인서는 추가 제출 가능 3. 총 60시간 실습이 완료(예정)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학생 ▶ 대학원	교육봉사일지, 교육봉사활동 설문지, 교육봉사 자기성찰 보고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를 대학원교학팀에 직접 제출
대학원 ▶ 담당교수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전달
담당교수	성적 부여

6. 봉사활동 대상 기관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마.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바.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사.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아.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1.10.27. 고시 개정)

(가능 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

(유의사항)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

7. 인정 봉사활동

- 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 교실, 늘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 실시하는 교육봉사 활동
- 나.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경우 교과목 학습 지도, 특기 적성 지도,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초등 돌봄교육,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체험학습지원 활동
- 다.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연계교육(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연계 학기 등) 등을 경험 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8. 불인정 봉사활동

- 가.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 나. 학교 도서관 책 정리 등 사서 업무, 간식지도, 급식지도, 야간 자율 학습 감독, 교무 보조 등
- 다. 기타 교육적 목적이 낮은 활동
- 라. 봉사 활동 완료 후 제출 서류에 가, 나항 내용으로 기재 되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처리함

9. 제출처: 대학원교학팀 대학본부 J417호

- 별첨 1.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1부.
 2. 교육봉사일지 1부.
 3. 교육봉사활동 설문지 1부.
 4. 자기성찰 보고서 1부.
 5.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